

의안번호	2202623
의 퇴 인	김은혜의원
회 답 일	2024.11.1
추 계 번호	24B132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하여 수시 품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2,200만원, 2030년 1억 4,3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6억 6,100만원(연평균 1억 3,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골재의 품질기준 (안 제22조의4제2항)	122	126	132	137	143	661	13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4제2항 (골재의 품질기준)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적인 품질검사 이외에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에게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22조의4제2항 (골재의 품질기준)	○	• (추계)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골재생산 업체의 10%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추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적인 품질검사 이외에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에게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골재 품질검사¹⁾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한국골재산업연

1) 「골재채취법」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7(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검사(이하 “골재품질검사”라 한다)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골재의 사용자가 골재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골재와 관련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골재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골재품질 관련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이하 “품질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골재품질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품질관리전문기관은 골재품질검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원)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²⁾

-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으며 정기검사는 검사 7일 전까지 대상 업체로 검사 일시·이유·내용 등을 사전통보 후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 통보 없이 검사를 진행
- 품질검사 수수료는 골재채취업자가 부담하며, 수시검사의 경우 품질관리전문기관(한국골재산업연구원)의 부담으로 실시 중
 - 2022년 1곳, 2023년 2월 16곳 수시검사 실시
 - 품질검사는 콘크리트용 골재와 아스콘용 골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업체당 용도에 따라 2품목 단위의 검사를 실시하므로 본 추계에서도 업체당 2품목 검사비용의 평균치를 적용함(수수료 기준은 [참고자료 2]에서 확인)

□ 개정안에 따른 수시 품질검사의 시행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본 추계에서는 골재생산 실적이 있는 골재채취업자의 10%에 대해 매년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³⁾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⁴⁾ 전망치 적용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2) 이전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2022년 6월 8일부터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품질검사 실시

3) 골재채취 등록업체 현황

[등록업체 업종별 등록현황]

(단위: 개)

년 도	업체수	업 종 별 등 록 현 황						
		합 계	수 중	바 다	산 림	육 상	파 쇠	세 척
2021	1,395	1,986	21	38	391	543	922	71
2022	1,536	2,225	24	42	441	599	1,037	82
2023	1,512	2,171	27	38	422	596	1,011	77

자료: 국토교통부

4) 국회예산정책처명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024.10)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계대상)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골재품질검사(수시검사) 비용으로
검사대상 업체 수에 검사비용 단가를 곱하여 추산함
 - (검사대상 업체수)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로서 골재채취 실적이 있는 사
업자 중 매년 10%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골재채취 등록업체 현황

(단위: 개, %)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등록업체수	1,395	1,536	1,512	4.1
골재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수	778	814	809	2.0

자료: 국토교통부

- 골재생산 실적이 있는 등록업체수는 최근 3년간 등록업체수년 기준 등록
업체수에 최근 3년간 증가율(2.0%)을 적용하여 추계

[표 3] 골재생산 실적이 있는 등록업체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개)

	2026	2027	2028	2029	2030
골재생산 실적이 있는 등록업체수	858	875	892	910	928

주: 2023년 기준 골재생산 실적이 있는 등록업체 수에 최근 3년간(2021~2023) 연평균증가율(2.1%)를
적용하여 추정

- (단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라 업체별 2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수
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수수료는 콘크리트용 골재 및 아스
콘용 골재 검사 2품목 수수료 평균값인 1,366천원을 적용함
 - 골재검사는 업체별로 용도에 따라 굵은골재와 잔골재 두 종류로 생산이 이
뤄지고 있어 2품목을 기준으로 검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가정하며, 콘크리
트용 골재업체와 아스콘용 골재업체의 수수료 평균값을 추계에 적용([참고
자료 2]에서 확인)
 - 검사비용은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표 4] 골재채취 품질검사 수수료 품목별 현황

(단위: 원)

	콘크리트	아스콘	평균
1품목	1,019,000	1,051,000	1,035,000
2품목	315,000	347,000	331,000
합계	1,334,000	1,398,000	1,366,00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골재생산 실적이 있는 등록업체의 10%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억 6,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검사대상 업체수(A, 개)	86	87	89	91	93	446
수수료 단가(B, 천원)	1,423	1,451	1,480	1,510	1,540	—
합 계(A×B, 백만원)	122	126	132	137	143	661

주: 본 추계는 골재생산 실적이 있는 등록업체의 10%에 대해 품질검사(수시검사)를 실시할 때 소요비용을 추산한 결과로, 향후 검사비 지원대상이나 지원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

[참고자료 1] 골재 품질검사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골재는 건설공사용적의 70 ~ 80%를 차지하는 주요 기초재료로, 불량골재의 유통은 건설공사 전체의 품질저하 및 안전을 위협
- 3기 신도시, 주택공급확대 등 골재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나, 천연골재 고갈,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불량골재 유통 가능성 증가
- 이에,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품질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량골재의 유통을 차단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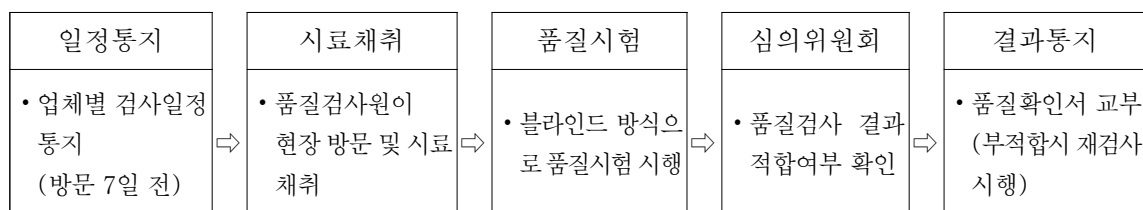
□ 추진경과

- 품질검사제도 도입 발표('21.3, '21.6)* 및 골재채취법령 제·개정('22.6)**
 - *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21.3),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6.24)
 - ** 골재채취법 개정('21.12), 시행규칙 개정('22.6), 업무처리지침 제정('22.6)
- 공모를 거쳐 품질관리전문기관 선정(7.11, 한국골재산업연구원)
- 권역별 설명회 개최(4회, 7.28~8.3), 보도자료 배포(5차례) 등 제도 홍보

□ 주요내용

- (기존)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
- (개선)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시행

□ 품질검사 주요절차



[참고자료 2] 골재 품질검사 수수료

(자료: 한국골재산업연구원)

1. 1품목 품질검사 수수료

항 목		1품목 기본 수수료 (원, VAT 별도)	비 고
인건비		483,402	품질검사원, 품질연구원
출장비		129,999	현장 시료채취 관련
기타경비		130,194	샘플용기, 탁송비, 검사차량비, 기타 행정처리비 등
소계		743,595	
시험비 (선택)	①콘크리트용 골재	275,550	
	②아스콘용 골재	307,450	
	③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골재	149,500	
총계		①1,019,000	백원단위 절사
		②1,051,000	
		③ 893,000	

2. 2품목 이상 품질검사 수수료

항 목		1품목 기본 수수료 (원, VAT 별도)	비 고
기타경비		40,000	샘플용기, 탁송비
시험비 (선택)	①콘크리트용 골재	275,550	
	②아스콘용 골재	307,450	
	③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골재	149,500	
총계		①315,000	백원단위 절사
		②347,000	
		③189,000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골재생산 실적이 있는 등록업체의 10%에 대해 품질검사(수시검사)를 실시할 때 소요비용을 추산한 결과로, 향후 검사비 지원대상이나 지원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